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7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18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채유미, 이세열, 최웅식, 유 용,  
양민규, 홍성룡, 박순규, 김상훈,  
이태성, 정재웅, 이광호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(정보수집)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하고, 중소기업포 및 사업장 내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고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중소기업”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 중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중소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에너지컨설팅 및 지원)**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)**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6조(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)** 시장은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)** ① 시장은 중소기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(업무협약의 체결)** 시장은 중소기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9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** 시장은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